

의안번호	제 385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3월 4일

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

의안 번호	385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20. 3. 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「아시안게임」은 45개국 아시아 국가가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, 45억 아시아인의 우호 증진과 화합,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세계종합스포츠 대회임
-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한 상황에서, 「2030 아시안게임」을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여 그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축적한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
-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(대회 유치 승인)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대회개요

- 명 칭 : (가칭) 2030 충청 아시안게임 * 주관 :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
- 개최시기 : 2030년 9월 ~ 10월 중(16일간)

- 개최지 : 충청권 4개 시·도(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)
- 규모 : OCA 회원 45개국, 3만여명 참가(선수 12,000명)
- 대회종목 : 40종목 67세부종목 465경기 * 2018 자카르타-팔렘방 AG 참고

나. 필요성

- 최초로 충청권 국제경기대회 공동 개최, 560만 충청인 자존심 회복
 - '93년 대전세계박람회 이후 37년만의 국제 메가 이벤트를 통해, 충청인 자존심 회복 및 공동체 의식 함양
- 국제적인 체육시설 건립, 수도권에 집중된 스포츠 인프라 분산
 - 공공체육시설 수도권 집중, 충청권의 스포츠 향유기회 전국 최저수준
 - * 수도권 8,543(32%), 영남권 7,398(27%), 호남권 4,234(16%), 충청권 3,946(15%)
- 저비용·고효율 대회로 “올림픽어젠다 2020”에 가장 부합
 - 기존 아시안게임에 비해 1조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모범 사례 마련
 - 중앙정부 국비지원(30%) 및 충청권 4개 시·도 비용분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부담 최소화
- 충청권, 2030 아시안게임 개최역량 충분
 - (체육시설) 4개 시·도 기존시설 최대 활용하여 경기장 신축 최소화
 - (교통) 대한민국 교통중심지로, 도로·철도·항공 인프라 완벽 구축 예정
 - * 청주국제공항으로부터 1시간 이내(반경 50km) 모든 경기장 배치
 - (문화) 백제문화권·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, 문화·관광자원 풍부
 - * 문화재청 지정 7대 문화권 중 2대 문화권의 중심권역으로 문화·예술·관광 인프라 보유

- (경제)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 보유
 - * 충청권 '18년 지역내총생산(GRDP) 240조, '19년 재정규모 약 19조

○ 2032 서울-평양 올림픽 성공개최의 마중물

- '86 아시안게임 · '88 올림픽과 같이, 2032 올림픽의 디딤돌 역할
- 국제 스포츠계 최대 행사를 연달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· 통일 의지를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

다. 기대효과

○ 경제적 기대효과

- 세계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대규모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
 - *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경제적 유발효과 : 18조 4,903억원(대외경제정책연구원)

○ 사회 · 문화적 기대효과 ⇨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 고취

- 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하던 충청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, 충청권 결집
- 지역 간 화합 · 통합모델로서, 국가 통합의 모범적 선례 마련

○ 충청권의 세계화 도약 기틀 마련

- 대한민국 · 충청권의 국제 브랜드 이미지* 향상
 - * 동북아 과학수도(대전), 대한민국 행정수도(세종), 세계 바이오·뷰티산업의 중심(충북), 세계적인 역사·문화·관광거점(충남)

○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· 세계 평화 분위기 정착에 기여

- 2032 서울-평양올림픽과 연계,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
- 전 세계에 한반도 통일, 세계 평화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

3. 관련법령

【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】

제6조(대회 유치 승인) ①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(경기단체를 포함한다)의 장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장등“이라 한다)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